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은 정보화·네트워크사회로 불리는 3차산업혁명을 넘어 4차산업혁명인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으며 지능정보화사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주는 로봇을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동이 가능한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는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12월 8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 또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시스템 고도화 촉진, 디지털 역량강화 부분의 연수 및 지도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있음에도

많은 서울시 위원회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만큼은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운영되도록 조례에 위원회 위원 구성 조건을 확실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